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06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0. 8. 접수 제193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362,995,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① 2017. 9. 28.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1,170,000,000원을, ② 2019. 8. 7. 가계일반자금대출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2022. 1. 7. 기준 대여금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약정일)	잔여 대출원금(원)
1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7. 9. 28.	1,170,000,000
2	가계일반자금대출	2019. 8. 7.	29,900,000
	합계		1,199,900,000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① 2018. 9. 28. 중소기업자금대출로 400,000,000원을, ② 2019. 7. 15. 중소기업자금대출로 6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1) 이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7. 9. 28. D에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으로 미화 3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2017. 10. 31. 대여금액이 미화 800,000달러까지 증액되었으며,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2022. 1. 7. 기준 대여금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약정일)	잔여 대출원금(원)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8. 9. 28.	400,000,000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9. 7. 15.	64,000,000
3	수입신용장발행관련대출	2017. 9. 28.	290,267,516
	합계		754,267,516

3) 원고는 2016. 7. 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4. 26. 대여금액이 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9. 1. 10. E에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과 관련하여 미화 3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E에 대한 2022. 1. 7. 기준 대여금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2)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약정일)	잔여 대출원금(원)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7. 7.	26,290,830
2	수입신용장발행관련대출	2019. 1. 10.	126,087,717
	합계		152,378,547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과 피고 A은 2008. 10.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가 2022. 1. 24. 부산가정법원 2022호협37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2. 5. 2.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C은 혼인기간 중인 2021. 6. 28.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 한다), 그 다음날 피고 A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21. 10. 1.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2021. 10. 8. 피고 B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한 2021. 6. 28. 및 2021. 10. 1. 원고는 C에 대하여 적어도 2,106,546,063원(= 대여금채권액 1,199,900,000원 + 연대보증채권액 906,646,06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원고가 제출한 위 채권 관련 자료가 2022. 1. 7.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시점이 위 기준시점보다 앞서 있음을 감안하여 각 대출원금만을 합산하였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4, 25호증, 을 제3, 4,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21. 6. 28. 당시 C은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21. 10. 1.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적극재산 ³⁾				
순번	재산 내역		재산가액(원)	
1	부산 사상구 H 대 838.2㎡		1,571,625,000 ⁴⁾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723,000,000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7,264,000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04,000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2,208,000	
6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대		11,000,000 이상	
7	D 주식 20,000주		미상	
	합계		2,355,201,000 이상	
소극재산 ⁵⁾				
순번	채권자	채무 개요	채무액(원)	발생일
1	원고	대여금	1,199,900,000	
		연대보증금	906,646,063	
2	I카드	현금서비스	3,000,000	2021. 10. 21.
3	J은행	지급보증 담보대출	14,874,000	2021. 7. 13.
4	K카드	카드론	15,000,000	2021. 3. 11.
5	F	신용대출	317,004,567 ⁶⁾	
6	기업은행	신용대출	29,900,000	2019. 8. 7.
7	L은행	보증채무	60,000,000	2017. 12. 26.
8	신용보증기금	위와 같음	1,500,000,000	2019. 5. 27.
9	M보증보험	위와 같음	500,000,000	2018. 12. 12.
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와 같음	28,080,000	2016. 12. 1.
11	N캐피탈	위와 같음	46,954,000	2021. 6. 21.
	합계		4,621,358,630 ⁷⁾	

3) 원고는 경남 합천군 O 토지도 C의 적극재산으로 들고 있으나 위 토지의 소유자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는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4) 부산 사상구 H 대 838.2㎡ 지상 건물이 D(대표자: C) 소유인 점을 고려하면 감정평가액 중 ‘지상 건물로 인하여 사용수익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산정된 토지 가격’을 위 토지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C은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감정서 기재 감정평가액 3,143,250,000원의 절반인 1,571,625,000원을 위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5)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2021. 6. 28. 및 2021. 10. 1. 기준 채무내역은 알기 어려우나, 각 채무내역 조회 시점(2021. 12.경 내지 2022. 1.경)과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각 채무의 발생일자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내역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6번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63,052,183원 + 8번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3,952,384원 7) 적극재산을 2,266,157,630원 초과하는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대의 시가, D 주식 20,000주의 시가를 확인하더라도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소극재산표 순번 7 내지 10은 보증채무이므로 실제 발생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증채무는 보증계약 체결 시 발생하고,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과 피고 A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6, 7, 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2021. 6. 28. 피고 A과 사이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그 후 C과 피고 A이 2022. 5. 2.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서, 위 증여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피고 A은 2008. 10. 22. C과 혼인하였는데, 2017년경부터 C이 잦은 외도를 하고 피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하여 C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19년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다. C과 피고 A은 2022. 1. 24. 부산가정법원 2022호협37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2. 5. 2.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이처럼 C과 피고 A의 혼인생활은 C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피고 A이 C에 대하여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C이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C과 피고 A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녀 2명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피고 A을 지정하였고 C이 월 60만 원(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 A으로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터 잡아 이혼 후에도 미성년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를 C로 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17,004,567원으로서, 이는 위 부동산의 시가 723,000,000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⑤ 결국 피고 A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통해 일부 적극재산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그 밖에 지나치게 과대한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⑥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증명은 있는 반면 그 아내인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옛날 집터이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조상묘 7기가 있는 문중 선산인데, 장손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C이 위 각 부동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자 위 각 부동산과 조상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온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옛날 집터라거나 문중 선산으로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종종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다른 종종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관련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0. 8. 접수 제193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근찬, 판사 허유정, 판사 정성희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에 있는 Q아파트 R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S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2층 아파트

1층 869.071㎡

2층 911.101㎡

3층 911.101㎡

4층 911.101㎡

5층 905.701㎡

6층 905.701㎡

7층 905.701㎡

8층 905.701㎡

9층 905.701㎡

10층 905.701㎡

11층 905.701㎡

12층 905.701㎡

13층 905.701㎡

14층 905.701㎡

15층 905.701㎡

16층 905.701m²

17층 905.701m²

18층 905.701m²

19층 905.701m²

20층 905.701m²

21층 310.648m²

22층 310.648m²

지하1층 147.678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T

철근콘크리트조 118.72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

대 115704.9m²

대지권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115704.9분의 63.549

2. 경상남도 합천군 U 대 332m²

3. 경상남도 합천군 V 대 2m²

4. 경상남도 합천군 W 전 1464m². 끝.

1) C은 D, E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C, D, E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도 주장하였으나, 각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갑 제1, 5, 14호증)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